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1.28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928-3459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11.28.(목)	24.12.09.(월)	24.12.10.(화)	24.12.11.(수)	24.12.17.(화)	24.12.20(금)~ 24.12.24.(화)	24.12.28.(토)~ 24.12.30.(월)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 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을 초과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28.(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시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4.12.09.(월)	24.12.10.(화)	24.12.11.(수)	24.12.17.(화)	24.12.20.(금)~ 24.12.24.(화) 건본주택 방문접수 (10:00 ~ 17:00)	24.12.28.(토)~ 24.12.30.(월) 건본주택 방문계약 (10:00 ~ 17:00)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10:00 ~ 14:00) <small>※고령자(만65세 이상),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건본주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62)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 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II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거정비과 - 11473 (2024. 11. 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4층, 최고층수 18층, 19개동 총 1,223세대(임대 208세대, 조합 506세대) 중 일반분양 509세대
 [특별공급 249세대(일반[기관추천] 48세대, 다자녀가구 50세대, 신혼부부 92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생애최초 4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4000692	01	059.8424A	59A	59.8424	19.9180	79.7604	53.9438	133.7042	34.6612	54	5	8	6	-	-	19	35	22
		02	059.9254B	59B	59.9254	20.4445	80.3699	54.0187	134.3886	34.9260	97	10	4	20	-	-	34	63	11
		03	059.9519C	59C	59.9519	20.6839	80.6358	54.0425	134.6783	35.0416	218	23	16	45	34	10	128	90	20
		04	084.9828	84	84.9828	26.6507	111.6335	76.6062	188.2397	48.5124	140	10	22	21	11	4	68	72	20
	합 계											509	48	50	92	45	14	249	260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체 대지면적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배분 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 (약식표기)		59A	59B	59C	84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1	2	5	2	10
	국가유공자 등	1	2	4	2	9
	장기복무 제대 군인	1	2	4	2	9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	2	5	2	10
	중소기업 근로자	1	2	5	2	1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50%)	4	2	8	11	25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50%)	4	2	8	11	25
신혼부부 특별공급		6	20	45	21	9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10	4	14
생애최초 특별공급		-	-	34	11	45
합 계		19	34	128	68	249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 금액 포함)

(단위 : m²,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	2회	3회	4회	5회	
								2025.04.16.		2025.08.20.	2025.12.17.	2026.04.15.	2026.08.19.	2026.12.16	입주지정일
59A	101동(3,4호), 102동(4,5호) 103동(4,5호), 104동(4,5호) 108동(4,5호), 110동(4,5호) 303동(1,2,3,4호)	29	1층	12	524,640,200	520,459,800	1,045,100,000	104,510,000	104,510,000	104,510,000	104,510,000	104,510,000	104,510,000	104,510,000	313,530,000
			2층	14	530,162,200	525,937,800	1,056,100,000	105,610,000	105,610,000	105,610,000	105,610,000	105,610,000	105,610,000	105,610,000	316,830,000
			3층	3	535,684,200	531,415,800	1,067,100,000	106,710,000	106,710,000	106,710,000	106,710,000	106,710,000	106,710,000	106,710,000	320,130,000
	106동(1,2호) 109동(1,2호) 305동(1,2호)	25	1층	4	514,248,800	510,151,200	1,024,400,000	102,440,000	102,440,000	102,440,000	102,440,000	102,440,000	102,440,000	102,440,000	307,320,000
			2층	6	519,670,400	515,529,600	1,035,200,000	103,520,000	103,520,000	103,520,000	103,520,000	103,520,000	103,520,000	103,520,000	310,560,000
			3층	6	525,092,000	520,908,000	1,046,000,000	104,600,000	104,600,000	104,600,000	104,600,000	104,600,000	104,600,000	104,600,000	313,800,000
			4층	4	530,513,600	526,286,400	1,056,800,000	105,680,000	105,680,000	105,680,000	105,680,000	105,680,000	105,680,000	105,680,000	317,040,000
		10~14층	1	541,306,600	536,993,400	1,078,300,000	107,830,000	107,830,000	107,830,000	107,830,000	107,830,000	107,830,000	107,830,000	323,490,000	
		15층이상	4	546,728,200	542,371,800	1,089,100,000	108,910,000	108,910,000	108,910,000	108,910,000	108,910,000	108,910,000	108,910,000	326,730,000	
59B	105동(4호) 106동(5호) 107동(4호) 109동(5호)	22	1층	3	528,656,200	524,443,800	1,053,100,000	105,310,000	105,310,000	105,310,000	105,310,000	105,310,000	105,310,000	105,310,000	315,930,000
			2층	4	534,228,400	529,971,600	1,064,200,000	106,420,000	106,420,000	106,420,000	106,420,000	106,420,000	106,420,000	106,420,000	319,260,000
			3층	4	539,800,600	535,499,400	1,075,300,000	107,530,000	107,530,000	107,530,000	107,530,000	107,530,000	107,530,000	107,530,000	322,590,000
			4층	4	545,372,800	541,027,200	1,086,400,000	108,640,000	108,640,000	108,640,000	108,640,000	108,640,000	108,640,000	108,640,000	325,920,000
			5층~7층	7	550,894,800	546,505,200	1,097,400,000	109,740,000	109,740,000	109,740,000	109,740,000	109,740,000	109,740,000	109,740,000	329,220,000
	102동(1호) 103동(1호) 104동(1호) 105동(1호) 107동(1호) 108동(1호) 110동(1호)	75	1층	4	518,164,400	514,035,600	1,032,200,000	103,220,000	103,220,000	103,220,000	103,220,000	103,220,000	103,220,000	103,220,000	309,660,000
			2층	5	523,636,200	519,463,800	1,043,100,000	104,310,000	104,310,000	104,310,000	104,310,000	104,310,000	104,310,000	104,310,000	312,930,000
			3층	7	529,108,000	524,892,000	1,054,0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316,200,000
			4층	7	534,529,600	530,270,400	1,064,800,000	106,480,000	106,480,000	106,480,000	106,480,000	106,480,000	106,480,000	106,480,000	319,440,000
			5층~9층	34	540,001,400	535,698,600	1,075,700,000	107,570,000	107,570,000	107,570,000	107,570,000	107,570,000	107,570,000	107,570,000	322,710,000
			10~14층	17	545,473,200	541,126,800	1,086,600,000	108,660,000	108,660,000	108,660,000	108,660,000	108,660,000	108,660,000	108,660,000	325,980,000
			15층이상	1	550,894,800	546,505,200	1,097,400,000	109,740,000	109,740,000	109,740,000	109,740,000	109,740,000	109,740,000	109,740,000	329,220,000
59C	101동(1,2호), 102동(2,3호) 103동(2,3호), 104동(2,3호) 105동(2,3호), 106동(3,4호) 107동(2,3호), 108동(2,3호) 109동(3,4호), 110동(2,3호)	218	1층	17	499,389,600	495,410,400	994,800,000	99,480,000	99,480,000	99,480,000	99,480,000	99,480,000	99,480,000	99,480,000	298,440,000
			2층	18	504,660,600	500,639,400	1,005,300,000	100,530,000	100,530,000	100,530,000	100,530,000	100,530,000	100,530,000	100,530,000	301,590,000
			3층	20	509,931,600	505,868,400	1,015,800,000	101,580,000	101,580,000	101,580,000	101,580,000	101,580,000	101,580,000	101,580,000	304,740,000
			4층	20	515,202,600	511,097,400	1,026,300,000	102,630,000	102,630,000	102,630,000	102,630,000	102,630,000	102,630,000	102,630,000	307,890,000
			5층~9층	92	520,423,400	516,276,600	1,036,700,000	103,670,000	103,670,000	103,670,000	103,670,000	103,670,000	103,670,000	103,670,000	311,010,000
			10~14층	40	525,694,400	521,505,600	1,047,200,000	104,720,000	104,720,000	104,720,000	104,720,000	104,720,000	104,720,000	104,720,000	314,160,000
			15층이상	11	530,965,400	526,734,600	1,057,700,000	105,770,000	105,770,000	105,770,000	105,770,000	105,770,000	105,770,000	105,770,000	317,310,000
84	201동(3,4호) 202동(1,2호) 203동(2,3호) 204동(1,2호) 304동(1,2호) 305동(3,4호)	79	1층	8	662,891,000	657,609,000	1,320,500,000	132,050,000	132,050,000	132,050,000	132,050,000	132,050,000	132,050,000	132,050,000	396,150,000
			2층	10	669,868,800	664,531,200	1,334,400,000	133,440,000	133,440,000	133,440,000	133,440,000	133,440,000	133,440,000	133,440,000	400,320,000
			3층	12	676,846,600	671,453,400	1,348,300,000	134,830,000	134,830,000	134,830,000	134,830,000	134,830,000	134,830,000	134,830,000	404,490,000
			4층	12	683,824,400	678,375,600	1,362,200,000	136,220,000	136,220,000	136,220,000	136,220,000	136,220,000	136,220,000	136,220,000	408,660,000
			5층~9층	26	690,802,200	685,297,800	1,376,100,000	137,610,000	137,610,000	137,610,000	137,610,000	137,610,000	137,610,000	137,610,000	412,830,000
			10~12층	11	697,780,000	692,220,000	1,390,000,000	139,000,000	139,000,000	139,000,000	139,000,000	139,000,000	139,000,000	139,000,000	417,000,000
	201동(1,2호) 202동(3호) 203동(1호) 204동(3,4호) 304동(3,4호)	61	1층	4	656,264,600	651,035,400	1,307,300,000	130,730,000	130,730,000	130,730,000	130,730,000	130,730,000	130,730,000	130,730,000	392,190,000
			2층	7	663,142,000	657,858,000	1,321,000,000	132,100,000	132,100,000	132,100,000	132,100,000	132,100,000	132,100,000	132,100,000	396,300,000
			3층	8	670,069,600	664,730,400	1,334,800,000	133,480,000	133,480,000	133,480,000	133,480,000	133,480,000	133,480,000	133,480,000	400,440,000
			4층	8	676,997,200	671,602,800	1,348,600,000	134,860,000	134,860,000	134,860,000	134,860,000	134,860,000	134,860,000	134,860,000	404,580,000
			5층~9층	14	683,874,600	678,425,400	1,362,300,000	136,230,000	136,230,000	136,230,000	136,230,000	136,230,000	136,230,000	136,230,000	408,690,000
			10~14층	17	690,802,200	685,297,800	1,376,100,000	137,610,000	137,610,000	137,610,000	137,610,000	137,610,000	137,610,000	137,610,000	412,830,000
			15층이상	3	697,679,600	692,120,400	1,389,800,000	138,980,000	138,980,000	138,980,000	138,980,000	138,980,000	138,980,000	138,980,000	416,940,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은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 공급계약 체결 후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함.**
- 본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이 적용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에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를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주거전용 및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람.
[평형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공부 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임.
- 분양대금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 하여야함.(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에는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 취급 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 정책,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 등으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대출 미신청자 및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제 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함.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함.)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약정일정에 따라 계산됨.(선납할인율은 분양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중도금,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함. 다만,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으며,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함.
- 가.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 나.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임.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됨.
- 전산 검색 결과 당첨 사실, 이중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함(주민등록표 등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 및 계약 체결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함.(사본 불가)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주택법 제54조4항1호에 의거 마감자재 목록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I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 무주택세대주 요건</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8 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서울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0 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④지역 :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는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서울특별시 거주자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배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배점항목</th> <th rowspan="2">총배점</th> <th colspan="2">배점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 <td rowspan="3">40</td> <td>4명 이상</td> <td>40</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3명</td> <td>35</td> </tr> <tr> <td>2명</td> <td>25</td> </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 <td rowspan="3">15</td> <td>3명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2명</td> <td>10</td> </tr> <tr> <td>1명</td> <td>5</td> </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 <td rowspan="2">5</td> <td>3세대 이상</td> <td>5</td> <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 </tr> <tr> <td>한부모 가족</td> <td>5</td> <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 </tr> </tbody> </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9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11.28.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공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주택 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4 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45 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p>■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p> <p>■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p>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p> <p>■ ①소득구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4.11.28.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구분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건축물 종류</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주택</td>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주택 외</td>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I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div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 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V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p>■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p>-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p>					
필요서류					
<p>본인 신청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p>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달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p>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2.17.(화) ~ 2024.12.26.(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p>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4.12.17.(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자격확인 제출 서류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표1>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비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기준 : 본인발급용 / 발급용도 : 특별공급 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의 현장 위임장 작성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신분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단, 국외취업(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 대상자 필수 제출] /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경우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	청약통장잔위 확인서		
	○	복무확인서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 날인), 재직증명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세대원(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명부로 접수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배점기준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 배점검산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추가 제출
		○	입양관계 증명서 (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임신 중인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소득산정대상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견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추가 제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추가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 중인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입양의 경우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뒤자리 포함)표시로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아래 소득증빙 구비서류 참조)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아래 자산입증 구비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1년 이상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가점 산정 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가점검산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단독 세대인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청약자(세대주이어야 함)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생애최초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소득산정대상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건본주택 비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 통산하여 5개년도 납부 입증서류(아래 생애최초 소득세 납부입증 구비서류 참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단독 세대인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추가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임신 중인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입양의 경우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뒤자리 포함)표시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아래 소득증빙 구비서류 참조)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아래 자산입증 구비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1년 이상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의 현장 위임장 작성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용도 :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의 현장 위임장 작성 불가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대리인 개인정보수집(견본주택 비치)		
부적격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및 세대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자료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금년도 신규는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근무기간 및 급여액 기재, 직인날인 필수) ※ 전년도 신규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입주자모집공고일이 7월 1일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①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
업자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 미가입자]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③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 날인)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근로소득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건본주택 ② 세무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사본,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구분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분류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세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다음 서류 중 하나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간이 과세자 중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표4>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산보유 확인 제출 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자치단체)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표5>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구 분	서류유형		발급기준	해당서류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본인	해외체류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출입국 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표6>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기준 : 본인발급용 / 발급용도 : 일반공급 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의 현장 위임장 작성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내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		신분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복무확인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 날인), 재직증명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세대원(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주택 비치 ※ 가점검산용
가점제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이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이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당첨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초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의 현장 위임장 작성 불가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발급용도 :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의 현장 위임장 작성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개인정보수집(견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부적격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자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전체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를 모두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에게 업무진행 관련(예비입주자 추첨일정 등) 안내와 관련하여, 청약시 등록한 연락처(전화, 주소 등)를 기준으로 안내드리오니 변동이 있으신 예비입주자께서는 사업주체에게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보 또는 연락받지 못함(부재, 번호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예비입주자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동일 주택형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를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p>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p> <p>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p> <p>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p> <p>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p> <p>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p> <p>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p>
--	--

VII 계약체결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 체결 기간		계약 장소	비고
당첨자 (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2024.12.28.(토) ~ 2024.12.30.(월) (3일간, 10:00~17:00)	별도 안내 예정	- 건본주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62)	일정 및 시간의 변동 시 별도 안내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첨 효력이 상실됨)
-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및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항목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신한은행	140-014-984357	삼선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1명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140-014-984446	삼선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1명

- ※ 상기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부터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은 계약금 계좌와 상이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자격검증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기준 : 본인발급용 /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건본주택에서 현금 수납 불가
		○	인지세 (전자수입인지)	-	· 해당 세대의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 등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아파트 공급계약 :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간 1/2씩 인지세 부담 / 추가선택품목 계약 : 시공사와 수분양자간 1/2씩 인지세 부담) ※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수입인지 세액 : ①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② 10억원 초과 : 35만원 ※ 발코니확장 계약 등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수입인지 세액 : ①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②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③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접수장소 비치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		인감증명서	본인(당첨자)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 절대 불가)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		인감도장	본인(당첨자)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하여야 함
	○		위임장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단, 전자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수 지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건본주택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계약 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분실했을 경우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러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일반 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 방법 및 유의사항

- 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당첨자 중에서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신청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사업주체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비율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제한되는 비율 만큼은 수분양자가 자납하여야 합니다.
-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총 공급대금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일 당월 대출이자 대납 실행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당월 사업주체의 대출이자 대납 실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당월 대출 대납 실행일전 입주지정일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병"이 납부하며, 입주지정일 최초일로부터는 "을"이 부담한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 (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에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람에 법인은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와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2021.10.21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VI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금액

주택형(약식표기)	금 액
59A	무상제공
59B	
59c	
84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샷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vat포함)

품목	구분	설치위치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제조사)	
					계약시			
시스템 에어컨	일반	기본	거실+안방(2개소)	59A,59B	2,800,000	280,000	2,520,000	삼성전자
				59C	3,000,000	300,000	2,700,000	
				84	4,600,000	460,000	4,140,000	
		전실	거실+안방+침실1+침실2 (4개소)	59A,59B	5,300,000	530,000	4,770,000	
				59C	5,600,000	560,000	5,040,000	
				84	6,600,000	660,000	5,940,000	
	프리미엄	기본	거실+안방(2개소)	59A,59B	3,900,000	390,000	3,510,000	
				59C	4,000,000	400,000	3,600,000	
				84	6,400,000	640,000	5,760,000	
		전실	거실+안방+침실1+침실2 (4개소)	59A,59B	7,100,000	710,000	6,390,000	
				59C	7,400,000	740,000	6,660,000	
				84	8,900,000	890,000	8,010,000	

2) 가전옵션

(단위 : 원 / vat포함)

품목	제조사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제품명)	
				계약시			
식기세척기	삼성	전 주택형	900,000	90,000	810,000	(DW60T7065SS) 가구도어패널형	
	LG		1,200,000	120,000	1,080,000	(DIB22S) 가구도어패널형	
주방TV (13인치)	13인치		300,000	30,000	270,000	(STV-1331AT)	
욕실 복합 환기 환	힘펠		1,000,000	100,000	900,000	(FHD3-C150P)	
냉장고 (수납 특화 키큰장 포함)	4도어 냉장고		삼성	3,300,000	330,000	2,970,000	(RF60C90R2AP)
			LG	3,500,000	350,000	3,150,000	(M622GBB352)
	3도어 김치냉장고		삼성	2,400,000	240,000	2,160,000	(RQ33C74E1AP)
			LG	2,400,000	240,000	2,160,000	(Z332GBB351)
3구 인덕션	삼성		1,400,000	140,000	1,260,000	(NZ63DB657CAWS) 빌트인 디자인 인덕션	
	LG		1,200,000	120,000	1,080,000	(BEI3WWQLBI) 빌트인 디자인 인덕션	

3) 가구/마감재 옵션

(단위 : 원 / vat포함)

설치위치	품목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현관	현관 중문(3연동 슬라이딩)	전타입	1,300,000	130,000	1,170,000		
거실	거실 스타일업_벽 마감형①	59A	3,100,000	310,000	2,790,000	-거실 아트월, 복도 단천장 및 월위셔 조명 -거실 아트월, 복도 유럽산 세라믹타일 -거실·복도·주방 벽 시트 판넬 ※ 거실 스타일업_벽 마감형① 선택 시 벽 마감형② 선택 불가	
		59B	3,300,000	330,000	2,970,000		
		59C	3,200,000	320,000	2,880,000		
		84	3,400,000	340,000	3,060,000		
	거실 스타일업_벽 마감형②	59A/59B/59C	3,600,000	360,000	3,240,000	-거실 아트월, 복도(안방 앞) 단천장 및 월위셔 조명 -거실·복도·주방 벽 디자인 월 -안방·침실·욕실1 히든 도어 ※ 거실 스타일업_벽 마감형② 선택 시 벽 마감형① 선택 불가	
		84	3,900,000	390,000	3,510,000		
		거실 스타일업_바닥 마감형	59A/59C	1,800,000	180,000		1,620,000
			59B	1,900,000	190,000		1,710,000
주방	주방 스타일업	59A	1,500,000	150,000	1,350,000	-주방 벽·상판 최고급 엔지니어드스톤 -캐슬 미드웨이 선반	
		59B	2,000,000	200,000	1,800,000		
		59C	1,800,000	180,000	1,620,000		
		84	2,200,000	220,000	1,980,000		
안방	안방 불박이장(슬라이딩형)	59A/59B	4,000,000	400,000	3,600,000		

		59C/84	4,700,000	470,000	4,230,000	
침실2	침실2 붙박이장(수납 강화형)	59A	1,300,000	130,000	1,170,000	
		59B/59C/84	1,000,000	100,000	900,000	
		59A/59B	3,900,000	390,000	3,510,000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복도·주방 고급 매입등, 주방 고급 식탁등 -안방·침실 고급 직부등, 침실 커튼 박스 간접조명
59C	4,200,000	420,000	3,780,000			
84	4,800,000	480,000	4,320,000			
욕실 (공용+부부)	욕실 스타일업	59A/59B	5,500,000	550,000	4,950,000	-욕실 벽 유럽산 타일 -욕실 선반 하부 벽, 욕조 에이프런 엔지니어드스톤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 고급 비데 일체형 양변기 -고급 세면기 수전 및 욕조·레인샤워 수전, 욕실1코너 선반 ※욕실 스타일업 선택 시 욕실 ACC 및 샤워부스 색상 변경됨
		59C	5,600,000	560,000	5,040,000	
		84	6,900,000	690,000	6,210,000	

※ 유상옵션 설치 내역 및 상세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품목(유상 옵션) 공사대금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국민은행	465101-01-308679	롯데건설(주)
잔금	국민은행	465101-01-308666	롯데건설(주)

※ 상기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 품목(유상 옵션) 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함.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납부 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계약금 납부: 계약 시 상기 계좌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기간에 따른 환불이자는 없음.

※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유상옵션 선택품목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였음에 동의함.

※ 상기 유상 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음.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IX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설계상 주요 고지사항		설 계 공 지 내 용
공통	도로 및 기반시설	당 사업장은 삼선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내 대상지로 공동주택 외부에 표현된 도로, 공원, 주차장, 단독주택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계획되어 있으며,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카탈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당 사업장은 공동주택 택지-1, 택지-2, 택지-3으로 구성된 사업장으로 3개의 택지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 인가 등 인허가는 1개 사업장으로 승인되었으나, 준공 후 개별 단지로 구분되니,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 사업장은 공동주택 택지-1은 1단지, 택지-2는 2단지, 택지-3은 3단지로 명기하여 분양 홍보물 및 CG, 모형 등에 표현함.
		당 사업장 택지-1과 택지-2 사이에는 15m 도로가 있으며, 택지-1 북측부터 동측까지 8m 도로, 서측부터 남측에는 10, 15m가 있으며, 택지-2는 남측과 동측에는 10m 도로, 북측에는 8m도로가 있음. 택지-3은 북서측에 15m 도로, 북측 6~8m도로, 동측 15m 도로 서측 12m 도로가 위치하고 있음. 단지 주변 도로 및 대지경계선 밖 도로는 단지 내 소유가 아니며, 실사공 시 형태, 높이, 레벨 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
		당 사업장 택지-1 북측, 남서 측, 택지-3 북서 측에는 종교용지가 위치하고, 단지 내 소유가 아니며 인접 세대에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준공 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 상의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함.
		세대당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 사업장 택지-1 북측의 어린이공원 및 지하주차장 단지 주변 도로는 도시기반 시설로 단지 내 소유가 아니며 인접 세대에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사공과 동선, 식재, 레벨 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착공 및 분양 이후 실사공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인허가중 협의 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사공시 카탈로그, 모형, CG 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진출입 동선, 형태, 높이, 조경계획, 레벨 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 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카탈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본 사업지의 개발계획 (조경, 토목, 옹벽,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함.		

헬스설치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 및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외곽 경계에는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헬스가 설치될 예정이나, 단지 외부와의 레벨 차이에 따른 계획 변경, 조경계획 및 인허가 협의 등에 따라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구역경계	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지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 사면 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사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시공방법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
인허가	당 사업장은 2009년 6월 삼선5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09-214호)를 득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 당 단지는 2016년 8월 최초 사업승인완료(2015년 05월 접수)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으로 인해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서울시 좋은빛 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마감재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 목록표를 참조하시기 바람. 공장생산 자재(타일, 벽지, 시트, 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함. 본 공사 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엔지니어드 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 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됨.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님.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	견본주택은 59C㎡, 84㎡ 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미건립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커뮤니티모형 등)과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 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은 확장형 기준으로 제작되어 기본형 세대 선택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현관 문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 시공된 것으로 실제 본 공사 시공 제품과 무관함. 세대 현관문 틀 및 문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 품목 및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 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 견본주택, 카달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및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달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 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 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오기, 오타자로 인하여 잘못된 기재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람.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 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사업승인 도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음.
단지	공통주택(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옹벽,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 합니다. 단지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 및 외곽 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본 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디자인(마감재 및 패턴 디자인, 옥상 장식물, 창틀 모양 등), 지하 출입구, 선관, 외부 시설물 (난간 디테일, DA, 쓰레기 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 바닥 패턴 등), 주차장 구조 제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주동의 동출입구 및 외부 저층부 3개층 높이(필로티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임.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은 석재마감, 부대복리시설은 박판 세라믹타일 및 일부 석재마감이 적용 되었으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추후 옥외광고물 심의(자문) 및 좋은 빛 심의(자문)에 따라 조명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 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문주,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동 출입구, 차량 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입주 시 단지바닥 마감, 조경 상호형태, 입면 장식물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당단지는 확장 시 거실과 침실의 상호가 유리 난간이 적용된 조망형 이중창으로 확장 세대 거실과 침실로의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 운영에 따라 우편물 차량, 이사짐, 택배, 구급 차량 등이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으며, 일부 단지 내 도로는 경사에 따라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할 수 있음. 장애인협회 또는 준공 절차상 장애인 램프의 변경 또는 신설로 보행로가 변경될 수 있음. 우편물보관함은 지상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 및 피로티 하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음.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외부 엘리베이터는 조망형이 아니며 커튼 월룩으로 시공될 예정임. 단지 주 출입구 또는 인근에 어린이 통학 차량 주정차 공간이 조성되어 101동, 103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201동, 304동 저층 세대의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어린이 통학 차량 주정차 공간은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 시설물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해당 공간 내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주차동 옥상의 철제난간 설치 영역은 변경될 수 있음. 주차동 피로티 진출 입구간에 낙하물 방지 시설물이 추가 될 수 있음. 동 하부 지하1층 제연헬름 및 임대동(301동, 302동) 옥상에 제연 배기팬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헬름 급기 DA 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추후 실시공사 헬름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 수 있음. 각동 1층에는 DA(연기DA포함), 지하주차장 채광장, 주차장 급배기 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수경시설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될 예정이며,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 후 관리 규약에 따름. 단지 외부 및 기반 시설의 레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옹벽 및 화계, 사면 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모형, CG 등 분양홍보 물에 표현된 사항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시 아파트의 현장여건, 미관 개선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디자인, 재질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식재 기반조성 및 미관 개선을 위해 분양 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등)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 세대에 일조,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내 소방안전 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단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수경시설에는 수질 정화를 위한 장치 설치되며, 물놀이 시설이 아닌 관상용 시설이므로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음.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는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옥상녹화나 세대 미관 개선을 위한 인조잔디가 설치될 수 있으며 거주자 이용 불가한 공간이며,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준공 후 관리 규약에 따르고, 해당 녹화 구간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동 필로티 내부 혹은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 계획, 포장재, 포장 패턴, 외부 시설물은 본 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p>이로 인해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 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p> <p>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10개소(근린생활시설용 별도 설치 예정)가 설치될 예정이며 공동주택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각 동별 설치되지 않고 인접한 동이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가 동별로 상이함.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 및 디자인은 시공 여건 및 조경 공간 배치 개선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본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능력등급 MMIⅧ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197(g)로 설계되어 있음.</p> <p>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p> <p>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p> <p>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p> <p>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에 준하여 태양광 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일부 세대에 발생할 수 있음.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p> <p>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p> <p>스마트홈 IoT 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 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 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 해 가능함.</p> <p>당 사업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 통신 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추후 별도 협의에 따라 옥상 층 및 기타실에 옥외 안테나와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 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롯데 스마트홈'서비스는 3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p> <p>원패스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3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p> <p>월패드, CATV 등에서 확인 가능한 단지내 놀이터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모든 입주민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p>
단지출입구	1단지 차량 출입구 2개소, 2단지 차량 출입구 1개소, 3단지 차량 출입구 2개소가 설치되며 102동, 108동~110동, 204동, 301동~302동, 305동의 저층 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야간 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필로티	필로티 계획은 102동, 106~110동, 201동, 202동, 204동, 302동, 303동, 304동 각호 라인인 1개층 필로티, 203동, 305동 각호 라인인 2개층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음. 필로티의 내부 계획 및 마감 높이는 상이할 수 있음.
동출입구	<p>각 동의 주동 출입구는 1개층 필로티 또는 별도의 주동 출입구가 설치됨. 일부 주동은 지하 주차장 출입구와 연결된 통로가 설치됨. 주동 출입구의 내부 계획 및 높이는 코어별 상이할 수 있음.</p> <p>일부 동 필로티 내부에 자전거 보관소 및 휴게 공간이 설치됨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저층 일부 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설비 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정에 단차가 발생 가능함.</p>
아파트 주동	<p>101동 북측 및 남측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101동 북측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101동 북측에는 어린이공원(기부채납) 및 종교 용지가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101동 남측에는 보행자 출입구 및 어린이 통학 차량 주차 공간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101동 서측에는 폭 15m 도로(단지 외 도로) 및 도로변 주차장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01동 남동측에는 어린이놀이터(옥외) 및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01동 남측에는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옥외계단, 승강기)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102동 서측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102동 동측 지하층에는 단지 차량 출입구 및 경비실이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02동 북측에는 어린이공원(기부채납) 및 종교용지가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102동 동측에는 폭 8m 도로(단지 외 도로) 및 도로변 주차장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02동 동측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02동 남측에는 어린이놀이터(옥외) 및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02동 남측에는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옥외계단, 승강기)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103동 북측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103동 남측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103동 남측에는 보행자 출입구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103동 북측에는 어린이 통학 차량 주차 공간이 교병심의 조건으로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103동 서측 및 남측에는 폭 15m 도로(단지 외 도로) 및 도로변 주차장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03동 북동측에는 어린이놀이터(옥외) 및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03동 남측에는 어린이집 및 유아놀이터(옥외)가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03동 서측에는 도로와 단지 간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토목 옹벽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p> <p>103동과 104동 사이에는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옥외계단, 승강기)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104동 서측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104동 남측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104동 동측에는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승강기)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104동 동측에는 폭 8m 도로(단지 외 도로) 및 도로변 주차장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04동 북측에는 어린이놀이터(옥외) 및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04동 남측에는 어린이집 및 유아놀이터(옥외)가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04동 남측에는 도로와 단지간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토목 옹벽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p> <p>105동 남동측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105동 서남측에는 주민운동시설, 남측에는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05동 동측에는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옥외계단)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105동 동측에는 폭 8m 도로(단지 외 도로) 및 도로변 주차장이 설치되고, 서측에는 폭 10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위치 하고 있어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05동 북측에는 어린이놀이터(옥외) 및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05동 서측에는 어린이집 및 유아놀이터(옥외)가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05동 남측 및 서측에는 도로와 단지간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토목 옹벽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p> <p>105동 데크 하부 1개층으로 설치된 주민운동시설에 의해, 저층 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105동 하부에 기계실,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105동 북서측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106동 서측에는 폭 10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위치 하고 있어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06동 서측에는 도로와 단지간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토목 옹벽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p> <p>106동 남측에는 어린이놀이터(옥외) 및 휴게공간, 북측에는 주민운동시설과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06동 북동측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106동 남측에는 종교용지가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6동 동측에는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옥외계단, 승강기)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6동 데크 하부 지하1층 1개층으로 설치된 주민운동시설에 의해, 저층 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7동 서측에는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옥외계단, 승강기)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7동 데크 하부 지하1층 1개층으로 설치된 커뮤니티시설에 의해, 저층 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7동 북측 및 동측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7동 남동측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주차장 공간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7동 남서측에는 어린이놀이터(옥외) 및 휴게공간이, 동측에는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7동 북측에는 폭 8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위치 하고 있어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8동 북측에는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옥외계단,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교통심의 조건)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8동 북측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8동 서북측에는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8동 지상 1층에는 경로당 및 근린생활시설에 의해, 저층 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8동 데크 하부 지하 1층 1개층 으로 설치된 경로당 및 근린생활시설에 의해, 저층 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8동 동측에는 폭 15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8동 남동측에는 문주가 위치하고 있어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9동 동측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주차장 공간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9동 서측에는 종교용지가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9동 서측에는 어린이놀이터(옥외) 및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9동 동측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9동 남동 측에는 어린이놀이터(옥외) 및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110동 남측에는 어린이놀이터(옥외)가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110동 북측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주차장 공간 및 차량 출입구, 지하 주차장 램프, 문주 및 경비실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0동 동측에는 폭 15m 도로(단지 외 도로), 남측에는 폭 10m 도로가 위치 하고 있어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110동 남동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201동 북측 및 남측에는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옥외계단, 승강기)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01동 서측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주차장 공간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201동 북측에는 보행자 출입구 및 경비실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201동 북측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201동 동측에는 어린이놀이터(옥외) 및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201동 동측에는 도로와 단지간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토목 옹벽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201동 데크 하부에 설치된 경로당 및 경로당 선큰, 게스트하우스, 근린생활시설에 의해 저층 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01동 북측에는 폭 8~10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201동 하부에 기계실, 저수조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02동 북측에는 어린이놀이터(옥외) 및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202동 북측 및 동측에는 도로와 단지간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토목 옹벽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202동 북측에는 보행자 출입구 및 경비실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202동 서측에는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옥외계단, 승강기)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02동 데크 하부에 설치된 주민운동시설에 의해, 저층 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02동 동측에는 폭 10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202동 북측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203동 남측에는 어린이놀이터(옥외), 동측에는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203동 남측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203동 동측에는 도로와 단지간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토목 옹벽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203동 데크 하부에 설치된 주민운동시설에 의해, 저층 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03동 동측 및 남측에는 폭 10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203동 3호세대 필로티는 비상시 소방차가 하부로 통과하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음.

204동 동측에는 어린이놀이터(옥외)가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204동 동측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204동 데크 하부에 설치된 주민운동시설에 의해, 저층 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04동 데크 하부에 설치된 차량 출입구로 의해,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204동 서측에는 폭 15m 도로(단지 외 도로), 남측에는 폭 10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204동 하부에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04동 동측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301동 설치된 차량 출입구로 의해,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301동 북측에는 종교용지가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301동 하부에 지하주차장 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진동, 소음 및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301동 남측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301동 북측에는 주민운동시설에 의해, 저층 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301동 동측 및 남서측에는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옥외계단, 승강기)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301동 서측에는 폭 12m 도로(단지 외 도로), 동측에는 폭 6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301동 동측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302동 데크 하부에 설치된 주민운동시설에 의해, 저층 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p>302동 남측에는 도로와 단지간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토목 옹벽 및 경사면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수 있음.</p> <p>302동 북측 및 서측에는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옥외계단, 승강기)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302동 동측 및 북측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302동 서측에는 폭 12m 도로(단지 외 도로), 남측에는 폭 8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303동 서측 및 남동측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303동 북측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303동 북측에는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옥외계단, 승강기)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303동 북측에는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303동 남측에는 도로와 단지간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토목 옹벽 및 경사면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수 있음.</p> <p>303동 북측에는 보행자 출입구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304동 남측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304동 북측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주차장 공간 및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304동 남측 및 서측에는 도로와 단지간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토목 옹벽 및 경사면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수 있음.</p> <p>304동 동측에는 어린이집 및 어린이놀이터(옥외)가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304동 데크 하부에 설치된 커뮤니티시설에 의해, 저층 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304동 서측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305동 남측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305동 데크 하부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에 의해, 저층 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305동 서측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주차장 공간 및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p>305동 북측에는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옥외계단, 승강기)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305동 데크 하부에 차량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진동, 소음 및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305동 남측에는 어린이집 및 어린이놀이터(옥외)가 위치하여,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305동 하부에 기계실,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BI 사인물은 102동, 103동, 106동, 201동, 203동, 204동, 302동, 305동 측벽에 각각 1개소 적용될 예정임. BI 위치 및 디자인은 분양홍보물과 모형자료를 참조하되, 본시공 시 인허가 협의 등으로 인하여 위치가 변동 될 수 있음.</p> <p>단지 특화측벽은 102동, 103동, 106동, 108동, 201동, 203동, 302동 측벽에 각 1개소, 305동 측벽에 2개소 적용될 예정임, 특화 측벽은 커튼 월룩과 경관 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디자인, 색상, 재료 및 위치 등은 분양홍보물과 모형자료를 참조하되, 본시공 시 각종 협의 및 인허가 협의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 색상, 재료, 위치 등이 변동 될 수 있음.</p> <p>계단실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최상층 1개소, 최하층 1개소 및 중간층 5개층 마다 1개소씩(동별/ 호수별 층수에 따라 상이함)만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고 나머지 층은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이 설치됨. 다만, 그 위치, 크기 등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p> <p>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명, 상호형태, 입면장식 등으로 인하여 사다라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p> <p>주동 기준층 엘리베이터 공용홀에는 개폐 가능한 창호 1개소가 설치되며 코어별 창호 사이드 및 채광 정도는 상이함.</p> <p>동 하부 지하 1층 제연헬륨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헬륨 급기 DA 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추후 실 시공시 헬륨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 수 있음.</p> <p>각 동 1층에는 DA(제연DA 포함), 지하주차장 채광창, 주차장 급배기 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음.</p> <p>아파트 주동 주변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소방용 연결송수구가 설치 될 예정임.</p> <p>103동, 202동, 304동 지붕 층에는 정화조 배기 덕트가 설치되며, 하부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계단실 창호는 개폐가 가능한 창호로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공용홀의 개폐 가능한 창호(1층, 최상층 및 5개 층마다 1개소)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p> <p>엘리베이터홀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호는 화재 시 연기 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 가압을 위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되어 있음. 단, 하나의 엘리베이터홀 내에 두 개의 창호가 설치될 경우 그중 1개의 창호는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이 설치되고 나머지 창호만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됨.</p> <p>2단지 203동, 204동에서 한성여고 배면 화장실이 보일 수 있음. 한성여고 복도에서 2단지 203동, 204동 저층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음.</p> <p>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 도서 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105동, 107동, 301동, 302동 코어는 코어별 2대의 승강기가 설치되고,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6동, 108동 109동 110동, 201동~204동, 303동~305동 코어는 1대 설치될 예정임.</p> <p>1택지 101~105동은 지하 3층, 106~110동은 지하 1층, 2택지 지하 2층, 3택지 지하 2층 주차장 주동 출입구 인근에 코어별 1개소씩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위치 및 이동거리는 상이함.</p>
주동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지하 4층까지 4개 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레벨로 인하여 주동과 연결된 주차장은 2개 층임. 차량 진입구의 주차 차단기 설치로 외부 차량 진입 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무인택배	지하주차장 주동 통로의 높이는 2.3m이며,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메인 차량 동선의 주동 통로 높이는 2.7m로 계획됨. 지하주차장 이용 시 택배차량의 정하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 주차장	<p>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람.</p> <p>102동과 104동 사이, 108동과 110동 사이, 204동 하부, 301동 하부, 305동 하부로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저층 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단지 지하주차장(107동, 108동, 109동, 110동 사이) 하부로 오수 관로가 통과하여 성북구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통해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할 예정임.</p> <p>지하주차장은 해당 단지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p> <p>지하주차장의 차량출입구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p> <p>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 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p> <p>지하주차장 주차 공간의 일반주차 폭 2.3m, 확장주차 폭 2.5m, 경형 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 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음.</p> <p>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랜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p> <p>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p> <p>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p> <p>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동 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음.</p> <p>발전기실/ 전기실/ 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인접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p> <p>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헬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할 수 있음.</p> <p>지하주차장에는 동지하 E/V를 냉난방용 실외기가 노출 설치되며, 실외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할 수 있음.</p> <p>지하주차장 최하층 홀에는 제습기가 설치되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할 수 있음.</p> <p>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추후 실공사 과정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음.</p>
부대복리 시설	<p>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 구획 공간 또는 지붕, 지상동출 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고,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p>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p> <p>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내부 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내부 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p> <p>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p>1단지 관리사무소는 106동과 107동 사이 지하 1층에 전면 개방형으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p>1단지 경로당(시니어클럽)은 108동 지상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p>1단지 어린이집은 105동 서측 지상1층에 별도로 설치되며,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인접한 외부에 유아놀이터가 설치되어 이로인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p>1단지 작은도서관(북카페), 독서실은 107동과 108동 사이 지하 1층에 전면 개방형으로 설치되며,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p>1단지 스포츠시설(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 밀티룸, 샤워/탈의실 등)은 105동과 106동 사이 지하 1층에 전면 개방형으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p>2단지 관리사무소와 스포츠시설(피트니스, GX룸 등) 201동과 204동 사이 지하 2층에 전면 개방형으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됨.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p>2단지 경로당(시니어클럽)은 201동 지하1층에 전면 개방형으로 설치되며,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p>2단지 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가 201동 지하1층에 전면 개방형으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p>3단지 관리사무소와, 작은도서관(북카페), 독서실은 303동과 304동 사이 지하1층에 전면 개방형으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p>3단지 경로당(시니어클럽)은 304동 지하1층에 전면 개방형으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p>3단지 어린이집은 305동 남측 지상1층에 별도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인접한 외부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p>3단지 스포츠시설(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 샤워/탈의실 등)은 302동 지하1층에 전면 개방형으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p>택시3 삼선교회 인접 구간의 조경계획 중 단지 외부 건물의 진출입에 따라 일부 구간 조경에서 도로로 변경될 수 있음.</p> <p>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 및 디자인은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p> <p>관리사무소는 사업주체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예정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선정 이후 절차를 거쳐 다른 관리업체로 변경될 수 있음.</p> <p>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운영 및 이용을 결정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관여하지 않음.</p> <p>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p> <p>경로당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p> <p>작은도서관(북카페)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p> <p>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p> <p>준공 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 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 업무를 위한 입주관리 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 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음.</p> <p>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실외기실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 열감이 느껴질 수 있음.</p>
공급시설	<p>103동, 105동, 201동, 204동, 305동, 지하층에 물탱크실, 우수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빗물이용시설 등이 설치되어 해당 동 저층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
문주 및 경비실	<p>단지 주출입구 인접하여 주문주 및 단지 부출입구 인접하여 가벽형 부문주가 설치될 예정임.</p> <p>주문주, 부문주 계획으로 인하여 보행동선 및 도로선형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p> <p>주출입구에 경비실이 각 1개소 설치되며, 경비실 인접 주차차단기가 설치로 외부 차량 진입 시 차량 대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출입구에는 주차차단기 단독 설치로 외부 차량 진입 시 차량 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p>
단위세대	<p>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사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벽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따라 마감 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 아트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 치수는 해당 자재 및 부착 두께 만큼 줄어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할 수 있음.</p> <p>당 사업장은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따라 전용 84타입의 경우 층수에 따라 발코니 변화가 계획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가 침실-1 또는 침실-2에 위치하고 이에 따라 그 외 발코니 계획에 다르게 계획되어 있음.</p> <p>특히 개방형 발코니의 위치가 침실1에 위치하는 타입은 201동, 204동, 304동, 305동은 11층 이상, 202동 14층 이상, 203동 15층 이상에 해당되며, 침실2에 위치하는 타입은 201동, 204동, 304동, 305동은 10층 이하, 202동 13층 이하, 203동 14층 이하에 해당되니 관련 도면을 확인 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p> <p>단위세대 천장고는 H: 2,300으로 일부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p> <p>전용 59A, 59B, 59C 84 단위세대 미러형 계획으로 인해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p> <p>107동 1호 라인 59B 타입은 인허가 조건으로 2~3층, 6~8층, 11~12층에는 침실2 측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p> <p>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p> <p>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 시 문쪽에 의한 신발 걸림은 하자 사유가 아님.</p> <p>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p> <p>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있음</p> <p>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p> <p>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p> <p>세대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p> <p>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p> <p>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용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p> <p>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지 부위는 실시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시 문쪽에 의한 신발 걸림은 하자 사유가 아님.</p> <p>입주 시 세대 내 추가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및 가전 설치 시 마감재별 두께 차이에 의한 내부 치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p> <p>일부 평형은 공간구성에 따라 보일러 점검 간섭이 있을 수 있음.</p> <p>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p> <p>필로티 상부 세대 내 소방 피난용 완강기는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p> <p>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음.</p> <p>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p>
공통사항	
하향식 피난사다리	<p>각 단위세대는 하향식 피난 구내 피난 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 필로티 상부 단위세대 내 소방 피난용 완강기는 발코니에 설치되며, 고정 지지대는 발코니 창문 외부에 설치됨. 본 공사 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p> <p>피난용 하향식 사다리는 짝수층, 홀수층 교차 되게 설치되며 발코니 상부에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가 노출되어 있음.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1층 및 하부 필로티 세대는 설치되지 않음.</p>
제공품목	<p>각 세대별 기본 제공 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 제공 품목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외의 기기외 마감재가 주택형 별로 상이하므로 분양 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람.</p> <p>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 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 할 경우, 분양 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함.</p> <p>거실 아트월의 경우 해당 위치에 대형타일(600*1200)이 시공되며 주택형별 타일의 색상, 컬러, 종류 및 나누기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 홍보물을 통하여 제공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p> <p>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p> <p>현관중문 등의 유상옵션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p> <p>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p>
가구공사	<p>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p> <p>주방 냉장고장의 경우 확장 시 제공되는 품목이며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가구가 미적용 되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 홍보물을 통하여 제공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p> <p>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 수량 및 마감자재는 세대형 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p>

	<p>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아일랜드 식탁 포함)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 공사 시 동등 성능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 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 분배기는 본 시공 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 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 턱이 없으므로 사용 시 물 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 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 하시기 바람.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 내 목문, ABS 문의 상하부 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유사 이형 타입의 경우, 가구의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 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주방가구 상하부장 뒤판의 상하부 면은 마감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 평형별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재 및 사양 등이 상이 하오니 카탈로그 및 분양 홍보물을 통하여 제공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p>
창호공사	<p>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확장 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거실 및 침실 (59A, 59B, 59C, 84 타입)의 창호는 유리 난간이 적용된 조망형 이중창(유리 난간 일체형 창호)이 설치되며 유리 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함. 또한 이중창의 외부창호는 유리 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 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는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불가능함. 유리난간대의 높이는 FL기준 H:1,300으로 일부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내 실외기실 루버 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 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비확장 세대는 분합창이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 유리 난간이 설치되고 외부 창호는 단창이 설치됨. 루버 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음. 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 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음.</p>
전기/설비	<p>실 시공시 욕실의 천정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 배와 천장 내 설비 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으로 설치되며, 유상옵션 및 시스템 에어컨 세대는 제외임. (일부 중복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과 욕조 바닥에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음.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 주방 및 욕실 배기가 당해 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임대동(301동, 302동)은 세대 주방 및 욕실 배기가 동 옥상으로 배기되어 인접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세탁기, 건조기 2단 적재가 불가할 수 있음.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 좌측 하부에서 주방 개수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매립 배관 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 분기하고 배관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함. 각 층 세대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 방지 열선(카바형)이 설치됨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에 3층까지 방범용 배관 카바가 설치됨.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 소화기 설치 공간으로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 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가스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용 시설(경로당,어린이집,경비실)의 실외기 가동 시 인접 세대에 소음, 분진,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미관 저해가 발생할 수 있음.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저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수건선반 등), 욕실FAN 등의 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되거나 상이할 수 있음.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수전(세탁, 손빨래, 발코니) 사양 및 수전 높이,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 위치는 설계 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에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 변경은 불가함.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 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 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시공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 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 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 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함.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함.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주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 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함. 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수는 실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기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음.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p>
발코니 및 실외기실	<p>다용도실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등 비확장 부위의 바닥 레벨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 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선홍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각 타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 배수 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 구조상 배관 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음. 일부 구간에 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음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 인접실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지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안방 또는 침실 전면 비확장 발코니에 설치되는 전통빨래 건조대와 스위치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유상옵션	<p>건본주택 내 건립 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추가 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 선택 시 건본주택 건립 세대의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람. 현관중문 옵션 설치 유무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하자보수를 위해 위치가 조정될 수 있음. 주방 스타일업 옵션선택 시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상판이 설치 되며, 옵션 미선택 시 주방 벽은 국산타일(300*600), 주방 상판은 인조대리석(MMA)이 설치됨. 주택형별 컬러 및 모델이 상이 하므로 카탈로그 및 분양 홍보물을 통하여 제공 사양을 확인 하시기 바람.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 품목은 설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 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 불가 하며, 상세 사항은 추후 상품구성안을 참조 하시기 바람.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제공방식 등이 주택형별로 상이 하므로 옵션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함. 주방가전 선택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거실/주방/복도 바닥 타일 마감 선택 시 강마루 및 현관 디딤판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접합부 디테일 및 나누기도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자재의 특성상 타일의 색상 및 패턴은 건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p>

<p>건본주택은 마감 고급화 및 상품강조를 위하여 대형 세라믹타일(이태리산)옵션안으로 시공되었으며,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아트월 타일(아시아산)이 설치됨. 또한,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p> <p>자재 양중, 시공의 용이성, 하자보수의 편의성으로 대형 세라믹타일은 현장 여건에 맞도록 커팅 시공됨.</p> <p>거실 스타일업 벽 마감형(거실,복도,쇼파뒷벽 시트판넬마감) 미선택 시 거실 아트월 제외 부위는 벽지 마감임. 또한, 시트판넬의 나누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p> <p>거실 스타일업 바닥 마감형(거실, 복도, 주방) 외산바닥타일(이태리산) 옵션 미선택 시 전실 강마루 마감임.</p> <p>조명 스타일업 옵션선택 시 거실 우물천장 조명(간접)이 제공되며, 세대형별 우물천장의 크기,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또한, 거실 우물천장 조명(간접) 설치 시 기본 직부등은 설치되지 않음.</p> <p>비스포크 냉장고,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장이 확장 시 설치됨.</p> <p>비스포크 냉장고,김치냉장고 옵션선택 시 수납 효율을 높여주는 수납 톨장이 함께 제공되며, 유상옵션 미선택 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장이 확장 시 설치됨.</p> <p>식기세척기 옵션 미선택 시 해당 위치에 수납장이 제공됨.</p> <p>3구 인덕션 선택형 옵션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됨.</p> <p>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장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우물천정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p> <p>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음.</p>

※ 주의사항

- ① 본 제작물의 평면도 및 투시도 등의 CG 삽화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② 발코니 선홈통및 드레인의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변경될 수 있음.
- ③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시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④ 발코니 측·외벽에단열재 추가 설치시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 ⑤ 가변형 구조 변경시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다소 상이할 수 있음.
- ⑥ 배치도(CG, 모형)의 단지내·외부도로선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⑦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 ⑧ 건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됨.

X 기타 사항

기타 계약자 안내사항

■ 단지의 구분관리

- 당 사업장은 공동주택 택지1, 택지2, 택지3으로 구성된 사업장으로 3개의 택지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는 1개 사업장으로 승인되었으나, 준공 후 택지1은 1단지, 택지2는 2단지, 택지3은 3단지으로 구분되니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주택법」제48조의2「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4월경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암반, 문화재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선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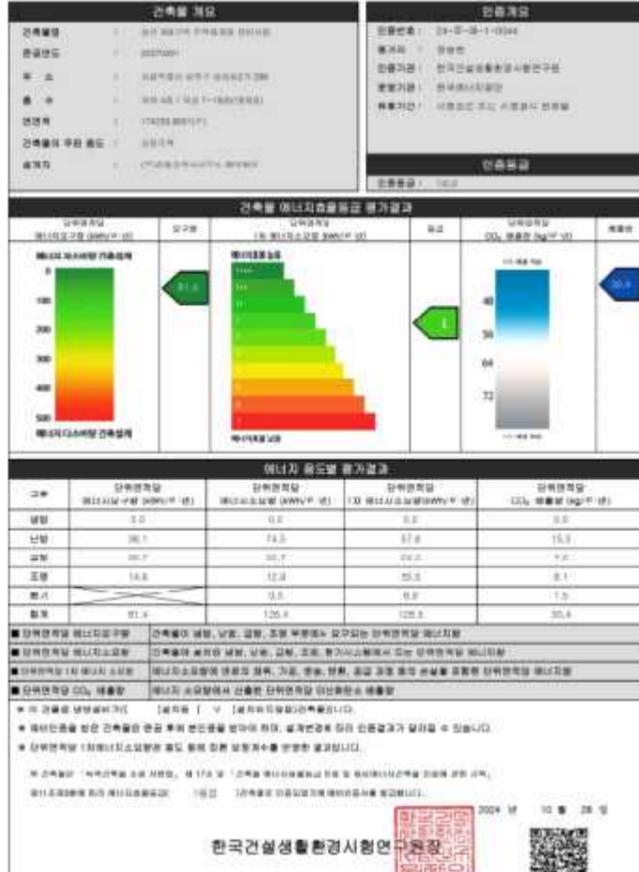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게스트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실외 주민운동시설] 등
- 일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실외)은 조경 및 시설물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규정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p>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본 인증서는 「녹색건축을 촉진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18년 4월 2일</p> <p>한국환경건축연구원</p>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에 따른 항목별 배점 기준</p> <p>1. 공동주택명 : 삼선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신청자 : 삼선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3. 평가등급</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성능부문</th> <th rowspan="2">성능항목</th> <th rowspan="2">세부 성능항목</th> <th colspan="5">성능등급별 점수</th> </tr>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소용</td> <td rowspan="4">경량충격음 차단성능</td> <td>중량충격음 차단성능</td> <td>3</td> <td>4</td> <td>5</td> <td>6</td> <td>7</td> </tr> <tr> <td>중량충격음 차단성능</td> <td>3</td> <td>4</td> <td>5</td> <td>6</td> <td>7</td> </tr> <tr> <td>중량충격음 차단성능</td> <td>3</td> <td>4</td> <td>5</td> <td>6</td> <td>7</td> </tr> <tr> <td>중량충격음 차단성능</td> <td>3</td> <td>4</td> <td>5</td> <td>6</td> <td>7</td> </tr> <tr> <td rowspan="2">구조</td> <td rowspan="2">내구성</td> <td>내구성</td> <td>3</td> <td>4</td> <td>5</td> <td>6</td> <td>7</td> </tr> <tr> <td>내구성</td> <td>3</td> <td>4</td> <td>5</td> <td>6</td> <td>7</td> </tr> <tr> <td rowspan="4">환경</td> <td rowspan="4">실내공기질</td> <td>실내공기질</td> <td>3</td> <td>4</td> <td>5</td> <td>6</td> <td>7</td> </tr> <tr> <td rowspan="4">생활환경</td> <td rowspan="4">소음</td> <td>소음</td> <td>3</td> <td>4</td> <td>5</td> <td>6</td> <td>7</td> </tr> <tr> <td rowspan="4">화재소방</td> <td rowspan="4">화재소방</td> <td>화재소방</td> <td>3</td> <td>4</td> <td>5</td> <td>6</td> <td>7</td> </tr> <tr> <td>화재소방</td> <td>3</td> <td>4</td> <td>5</td> <td>6</td> <td>7</td> </tr> <tr> <td>화재소방</td> <td>3</td> <td>4</td> <td>5</td> <td>6</td> <td>7</td> </tr> <tr> <td>화재소방</td> <td>3</td> <td>4</td> <td>5</td> <td>6</td> <td>7</td> </tr> </tbody> </table> <p>성능합계: 39점</p> <p>주택용도 형상에 따른 가산비율 기준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성능등급에 따른 항목별 점수는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p> <p>2018년 04월 02일</p> <p>한국환경건축연구원</p>	성능부문	성능항목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별 점수					★	★★	★★★	★★★★	★★★★★	소용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3	4	5	6	7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3	4	5	6	7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3	4	5	6	7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3	4	5	6	7	구조	내구성	내구성	3	4	5	6	7	내구성	3	4	5	6	7	환경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	3	4	5	6	7	실내공기질	3	4	5	6	7	실내공기질	3	4	5	6	7	실내공기질	3	4	5	6	7	생활환경	소음	소음	3	4	5	6	7	소음	3	4	5	6	7	소음	3	4	5	6	7	소음	3	4	5	6	7	화재소방	화재소방	화재소방	3	4	5	6	7	화재소방	3	4	5	6	7	화재소방	3	4	5	6	7	화재소방	3	4	5	6	7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14조 제4호 제2호)에 따라 2018.4.20</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본 인증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4호 제2호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18년 4월 20일</p> <p>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p>
성능부문	성능항목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별 점수																																																																																																																															
		★	★★	★★★		★★★★	★★★★★																																																																																																																														
소용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3	4	5	6	7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3	4	5	6	7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3	4	5	6	7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3	4	5	6	7																																																																																																																														
구조	내구성	내구성	3	4	5	6	7																																																																																																																														
		내구성	3	4	5	6	7																																																																																																																														
환경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	3	4	5	6	7																																																																																																																														
		실내공기질	3	4	5	6	7																																																																																																																														
		실내공기질	3	4	5	6	7																																																																																																																														
		실내공기질	3	4	5	6	7																																																																																																																														
생활환경	소음	소음	3	4	5	6	7																																																																																																																														
		소음	3	4	5	6	7																																																																																																																														
		소음	3	4	5	6	7																																																																																																																														
		소음	3	4	5	6	7																																																																																																																														
화재소방	화재소방	화재소방	3	4	5	6	7																																																																																																																														
		화재소방	3	4	5	6	7																																																																																																																														
		화재소방	3	4	5	6	7																																																																																																																														
		화재소방	3	4	5	6	7																																																																																																																														

- ※ 녹색건축 예비인증은 향후 재인증 예정입니다.
- ※ 상기 예비인증은 완공 후에 본 인증을 받을 계획이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구분	내진능력(MMI 등급)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197(g)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m	일반 2.3m / 택배차량 진입동선 2.7m	2.7m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402,967,600,000	제 01292024-101-00069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주택분양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것에 대하여 동의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보증회사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람(1566-9009)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금액단위 : 원]

구 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원)	비 고
건축	(주)토펙엔지니어링	3,828,016,500원	부가세 포함
전기	태양기술단(주)	976,193,300원	
소방 / 통신	유원이앤에프(주)	928,400,000원	

※ 상기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감리금액을 포함한 총액이며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구 분	시행사(사업주체)	시공사	비 고
법인명	삼선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롯데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14471-0003472	110111-0014764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5402호(돈암동,한진스포츠센터)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잠원동)	

※ 시행사 및 시공사의 법인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고지하고 별도 공고는 하지 않음.

분양관련 문의

대표번호	건분주택 위치	홈페이지	비 고
02-928-345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62	https://www.lottecastle.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건분주택 및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